

懸案分析 93-7

英國의 選舉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制
(增補)

1993. 10.

연구자 : 박영도(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懸案法制分析의 紹介

「懸案法制分析」은 現行法制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새로운立法推進方向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입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懸案問題를 爭點立法의 背景과 主要內容, 爭點事項등을 外國의立法例를 참조하여 短期에 심층적으로 分析하여 발간하는 不定期刊行物입니다. 「懸案法制分析」에 게재된 내용은 研究院의 公式的 見解가 아님을 밝히며,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103

한국법제연구원 국내법제연구실

TEL. 722-0163~5

目 次

I. 概 說	1
II. 英國에서의 選舉腐敗 및 違法行爲의 制裁	2
1. 英國의 選舉腐敗의 實態	2
2. 腐敗防止의 努力	4
III. 「1883년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制定	7
1. 立法經過	7
2.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構成과 特徵	11
IV.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效果	14
〈附錄-1〉 1883年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 全文	19
〈附錄-2〉 1983年 國民代表法과 1883年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比較	59

英國의 選舉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制

I. 概 說

政治家가 選舉에 즈음하여 당선을 하기 위하여 소정의 金錢이 필요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當選을 할 목적으로 행하는 매수 내지 향응제 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選舉運動일 뿐 아니라 선거의 公正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規制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 각종 選舉法에서도 選舉犯罪에서 나타나는 腐敗 내지 違法行爲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規制措置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規定內容이 미흡하고 또한 현실을 무시한 규정도 다수 지적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 現行 選舉法에서 나타나는 選舉犯罪의 現實의 動向에 주목하는 경우, 특히 최근 政治改革의 일환으로 돈안들고 깨끗한 선거의 모델로 英國의 選舉制度가 집중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腐敗選舉를 방지하는데 많은 示唆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近代選舉法의 母國이라고 일컬어지는 英國의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Corrupt and Illegal Practice Prevention Act)」을 소개하기로 한다.¹⁾

1) 이 報告書는 1993년 2월 본 연구원에서 발간한 「英國의 選舉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制(현안분석 93-1)」의 報告書를 대폭 보완하여 增刊한 것임. 또한 同 法律의 全文은 THE STATUTES REVISED, 3rd Edition 參照.

II. 英國에서의 選舉腐敗 및 違法行爲의 制裁

1. 英國의 選舉腐敗의 實態

영국의 政治腐敗는 영국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²⁾ 英國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選舉腐敗는 의원으로 선출되어 故鄉을 떠나 멀리 런던에 머무르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 되었던 시대에 金錢을 지불하여 이를 면하려는 것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議員의 지위가 이익을 수반하게 되면서 그 地位를 원하는 자가 나타나 우선 당시 선거구로 부터 議員에게 지불되었던 日當 또는 旅費手當을 법정액 이하로 받는 자가 나타났다.³⁾ 나아가 정부기관이 정비되고 의회의 權限도 확대되면서 부터 下院議員의 지위가 한층 향상됨에 따라 선거에 즈음하여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買收, 韻應, 脅迫 등이 행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초기의 매수는 직접 有權者에게 향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개 선거구를 구성하는 市當局이나 선거구의 土地所有者로서 선거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 大貴族에 향하였다.

일부의 者의 의향으로 의석의 귀추가 결정되는 이들 選舉區에서는 의석은 매매의 대상이 되어 選舉法改正이전의 시대의 전형적인 부패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1832년의 「第1次 選舉法改正(The Great Reform Act)」으로 인한 선거권의 확대는 새로이 대중차원의 유권자를 창출하였으며, 오늘날의 의미

2) William B. Gwyn, 「Democracy and Cost of Politics in Britain」, London(The Atolone Press), 1962, p. 61.

3) Cornelius O'Leary, 「The Elimination of Corrupt Practices in Britisch Elections 1868-1911」, London(Oxford University Press), 1962, p. 5.

에서의 買收 등이 만연한 것은 이 시대이후 부터 이었다.⁴⁾ 또한 선거권의 확대는 단순히 腐敗行爲의 客體로서의 유권자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패의 場 내지 主體가 되는 새로운 조직을 발전시켰으며, 登錄協會와 政治그룹이 바로 그것이다. 「등록협회」는 선거법개정에 의해 도입된 유권자의 登錄制度를 근거로 하여 유권자에게 登錄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에서 발생한 조직이며, 政黨의 지방조직의 원초형태를 이루었다. 한편 「政治그룹」은 런던에 본거지를 두면서 黨派의 선거활동의 전국적 조정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 등록협회와 정치그룹은 일부에서는 조직된 腐敗行爲의 온상이기도 하였다.⁵⁾

그런데 선거부패가 議員의 지위를 획득하는 매력에 의거한 것으로서 議員의 지위는 이 시대에 어떠한 의미에서 매력적인 것이었는가를 檢討할 필요가 있다. 우선 權力を 행사할 수 있거나 런던의 호화로운 궁전생활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議員의 地位를 이용하여 다양한 官職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이 지적된다.⁶⁾ 나아가 개인이나 단체에 特權을 부여하는 법률인 私法律의 범위가 확대되고 일반의원이 私法律案을 추진하는 경우가 광범하여 짐에 따라 의원의 지위를 획득하여 그 所在地의 항만시설이나 철도에 관한 것 등 각종 私法律의 제정에 관계하여 막대한 利權을 수중에 넣을 수가 있었다. 이 시대의 선거에 있어서 巨額의 「投資」는 이들 의원의 지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편익의 커다란 반영이었던 것이다.⁷⁾

4) Spencer Walpole, 「The Electorate and the Legislature」, London(Macmillan and Co.), 1981, p. 78.

5) Charles Seymour, 「Electoral Reform in England and Wales」, New Haven, 1915, pp. 438~439.

6) 예를 들면 1850년부터 1883년에 걸쳐 532명의 貴族家族이 그 7991인의 친족을 위하여 13888개의 官職을 입수, 그 收入의 총계는 1980년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30億파운드에 이르렀다고 한다.

2. 腐敗防止의 努力

원래 선거를 위한 것이든 買收는 Common Law상의 범죄가 되었으나,⁷⁾ 선거에 있어서 부패행위를 특히 대상으로 한 방지의 노력은 1698년의 「響應法」(Treating Act)의 제정으로 시작된다. 이 법률에서는 누구라도 當選을 하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 또는 본인의 이익이 되는 기타 方法 또는 본인의 비용으로 選舉人에게 금전, 식사, 음료, 오락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候補者에게는 의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1729년의 「買收法」(Bribery Act)에서는 후보자 또는 2인 이상의 선거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選舉人은 투표에 앞서 투표와 교환하여 금전, 고용 등을 받지 않을 것을 宣誓하여야 하는 취지를 규정하였다. 1809년의 법률에서는 당해 선거의 選舉權을 가지지 않은 자에 金錢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매수가 아니나, 오랜 관행 및 선거의 권리 및 자유에 반한다는 인식하에 選舉에서의 당선을 획득하

- 7) 1880년의 總選舉에서 전후보자가 사용한 選舉運動費用의 총액은 당시의 의원의 중언으로는 300萬파운드이며, 그 가운데 100萬파운드는 辯護士(선거사무장을 맡은 자)와 그 事務所의 주변인물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150萬파운드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단지 直接買收는 향응이나 임금·수당등의 명목에 의한 間接買收만큼 큰 것이 아니고 이들 비용의 대부분은 결국 酒店經營者의 수중에 유입되었다. 그리고 정당한 비용으로 사용된 金額은 50萬파운드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오늘날의 研究者の 推計에서도 이 시기의 선거운동비용의 總額은 250萬파운드이며, 이것은 1990년의 가격으로 5950萬파운드에 상당하며, 1979년 총선거에서의 선거운동비용의 總額 410萬파운드의 15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Michael Pinto-Duschinsky, 「Britisch Political Finance 1830-1980」, Wasington(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81, p.18 參照.
- 8) L.M. Helmore, 「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London(Routledge and Kegan Paul), 1967, pp. 27~28.

거나 획득할 목적에 의한 이들 行爲를 처벌하고 위반자의 議席을 인정하지 않게 하였다.

1835년에는 하원에 選舉買收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다수의 중인을 신문하여 선거부패의 실태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調查가 행하여져 그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1852년에는 「選舉委員法(Election Commissioners Act)」이 제정되어 당시 선거소송(부패행위를 이유로 하는 當選人の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심사하는 권한을 지녔던 下院의 위원회가 특정지역에서 광범위한 腐敗가 만연했다고 하원에 보고하고, 上下兩院의 결의로 國王에 대해 그 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國王은 7년이상의 경험을 지닌 法廷辯護士(하원의원이 아닌 자)를 선거위원으로 임명하여 強制力を 수반한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選舉委員은 그 후의 선거부패의 실태의 해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1883년의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제정 및 그에 앞선 각종 選舉腐敗防止立法의 제정의 추진력이 되었다.⁹⁾

그러나 買收 등 부패행위의 규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법상의 대응은 1854년의 「腐敗行爲防止法(The Corrupt Practice Prevention Act)」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동법은 지금까지의 腐敗防止諸法을 집대성하여 매수, 향응 및 不當抑壓의 상세한 정의를 규정함과 아울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정비하고 또한 최초로 各候補者の 선거운동비용명세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제출된 報告書는 선거운동비용감사위원회에 의해 監査되도록 하였다. 다만 선거운동비용의 最高限度額은 두지 않고 매수 등의 부패행위를 위

9) 1880년 런던동남에 소재한 Sandwich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選舉腐敗를 조사한 王立調查委員會(The Royal Commission of Enquiry)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에는 秘密投票制는 매수를 견제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점, 현재의 選舉費用의 보고에 관한 법률은 腐敗를 방지하는 목적에 전혀 이바지할 수 없다는 등 5개항에 걸친 報告가 행하여졌다.

한 지출을 별도로 한다면 그 지출방법에 대한 制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報告書監査의 목적은 오로지 지출로 부터 유래하는 부패행위의 발견과 감사를 행함으로써 부당한支出을 억제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일시적으로 腐敗行爲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직접적인 매수 대해서 그나름의 實效性을 발휘하였으나,¹⁰⁾ 그 이후는 선거운동원으로서 高額의 貨金을 지불하는 등의 간접적인 매수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의 입법조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1868년의 「議會選舉法(Parliamentary Elections Act)」 및 1872년의 「投票法(The Ballot Act)」의 제정이다. 前者は 지금까지 부패행위를 이유로 하는 선거소송의 소관이 下院의 위원회이었던 것을 法院(후의 高等法源의 王座部에 해당하는 민사법원)의 소관으로 개정한 것이며, 당파적 대립으로 인하여 종래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腐敗行爲 등을 이유로 하는 選舉訴訟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고, 부패행위의 축출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後者は 지금까지의 公開投票制를 바꾸어 1830년대이후 부패척결에 대한 결정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秘密投票制度의 도입을 실현한 것이다. 그러나 비밀투표는 매수, 향응과 병행하여 부패행위의 3大類型의 하나인 협박(부당억압)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選舉人の票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표의 시장가치는 저하되었으나, 買收에 관해서는 양진영으로부터 金錢을 받는 자도 나오는 등 오히려 이를 증가시킨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또한 이 投票法으로 대리투표가 위반행위가 되어 여기에서 1883년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에서 집대성되는 부패행위의 4가지의 類型(매수, 향응, 부당억압, 대리투표)이 나왔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입법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880년의 總選舉는 사후

10) Cornelius O'Leary, op.cit., p. 24.

의 선거소송에서의 審理와 선거위원의 調査에서 사상 최대의 부패선거이었음이 명확하게 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III. 「1883年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制定

1. 立法經過

1883년의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Corrupt and Illegal Practice Prevention Act)」은 자유당의 Gladstone內閣下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미 확립되었던 내각책임제에 의해 직접 이 법안의 起草, 하원에의 제출, 답변, 의사진행을 위한 動議의 제출 등을 담당한 것은 法務長官인 헨리 제임스이었다. 이 법률의 성립은 직접적으로는 그의 개인적 노력과 재능에 의한 것이 크다. 또한 法務長官은 국왕을 위하여 형사소추 기타 국가의 소송을 담당하는 최고관리이며, 통상 下院議員 가운데 취임하고 내각과 운명을 같이 하나, 이른바 「王의 大臣」으로서 하원에서 정부법안심의를 위한 동의를 제출할 수 있는 등의 特權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1883년의 법으로서 성립된 法案은 당초 1881년 1월과 1882년 2월의 두번에 걸쳐서 下院의 제1독회를 통과하였으나 어느것도 당시의 大問題이었던 아일랜드문제의 충격을 받아 未成立으로 끝났다. 세번째의 제1독회통과는 1883년 2월 16일이며 그 후 동년 6월 7일에 제2독회를 통과하여 全院委員會에 부의되어 7월 13일까지 21회에 걸쳐 全院委員會에서 심사가 행해진 후 최종적으로 8월 10일에 제3독회를 통과하였다. 上院에서는 8월 13일에 제1독회를 통과하고, 8월 22일 제3독회를 통과하였다. 女王의 동의는 8월 25일에 행해져 여기서 빅토리아 女王治下 제46년 및 제47년 법률 제51호로서 성립

하였다.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최초의 下院提出時인 1881년 1월 7일의 제1독회에서 제임스 法務長官의 연설에 가장 명료하게 표명되고 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동법제정의 目的을 우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¹¹⁾

『어떠한 法案을 제출하여 이 國家의 몇개선거구에서 발생한 것이 판명되고 있는 腐敗行爲를 끊임없이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는 의견에 대해 일반적인 同意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의 諸規定의 성질에 관하여 서술하기에 앞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害惡에 관하여, 따라서 또한 立法이 지향하여야 할 목적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存在하고 근래 발생한 가장 커다란 害惡의 하나는 전국의 선거의 대부분에 만연하고 있는 과도하게 無制限的인 費用에 의한 害惡이다. 후보자에게 그 선거를 위하여 과도한 多額의 비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당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가 커다란 害惡이다. 이 점은 우수한 정신적 능력을 지닌 人間이 政界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들 인간은 富라는 하나의 德, 그리고 그 덕밖에 가지지 못한 다른 자에게 자신의 場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害惡이 생겨나는 것은支出의 과정에서이다. 지출의 증가에서 발생하는 가장 커다란 가장 심각한 위험은 그것이 選舉의 場이 이 국가의 선거구민의 윤리를 파괴하는 효과를 지니게 하고, 그리고 선거로 부터 金錢을 획득하는 것을 유일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機會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은 政治的鬪爭이나 조직이나 선거사무장에 의해서 초래되는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견의 정직한 表明과 그 정치적 견해가 지배적이어야 된다는 소망에 가득찬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다. 선

11) Hansard 257, January 7, 1881, pp. 265~266.

거운동을 행하는 陣營을 금전으로 고용하는데는 오늘날 하나의 의문이 있다.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단지 하나의 목적, 즉 돈벌이 밖에 없다. 그들은 우리가 對處하지 않으면 안되는 보다 심각한 부패행위를 끊임없이 教唆하며, 자주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업무에 運動員으로서 1일에 1파운드를 수취하는 者가 그 액을 수령하는 것은 투표와 교환하여 金錢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법외적인 지출을 부패행위의 根源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하여 허락을 요구한 이 法案의 제규정의 다수는 지금까지 언급한 高額의 비용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목적으로 입안된 것이다.』

法務長官은 이어 법안의 주요한 규정의 몇가지에 관해 언급하고,¹²⁾ (a)그 다수가 雇傭의 外見을 가장한 간접매수인 有償雇傭을 선거사무장 1명 및 투표구마다 각 1명의 부사무장, 서기 및 운동원 등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것, (b)選舉事務所도 상기와 마찬가지의 구역마다 1개로 하며, 또한 酒類販賣店內 이외에 설치하는 것, (c)투표를 위한 유권자의 運送費用의 지출을 금지하는 것, (d)포스터의 揭示 등을 위한 지출을 금지하는 것, (e)이상의 개개의 支出規制에 벗어나는 수단에 의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선거운동비용의 總額의 한도액을 정하여 그 액은 선거구의 大小에 따르는 것, (f)지출을 수반하는 계약 및 지출은 選舉事務長을 통하여 행하는 것, (g)모든 請求書는 선거결과의 확정으로부터 30일이내에 선거사무장에게 送付되어 지불은 마찬가지로 40일이내로 하는 것, (h)마찬가지로 50일이내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治安判事의 앞에서 행한 虛偽宣誓罪의 적용을 받는 선서서를 첨부한, 선거운동비용의 收支의 명세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 (i)金錢 등을 얻어 선거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금하는 것, (j)禁錮外의

12) Ibid., pp. 266~271.

징역을 가하는 등에 의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 (k) 선거소송에 檢察總長을 참가시켜 소송에 있어서 부패행위가 행해진 충분한 혐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檢察總長에 의해 별개의 형사소추를 행하게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 (l) 選舉訴訟에서 부패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된 자에 관해서도 선거권을 상실케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개별의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현행제도를 재정하여 자동적으로 10년간 選舉權을 상실케 하는 것, (m) 후보자 스스로가 腐敗行爲를 범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후 재차 당해선거구로 부터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法務長官의 제안은 거의 그대로 실현되었으나, 그 요점은 ①당시의 실태로서 間接買收에 이용되었던 각종의 지출을 금지함과 아울러 선거운동비용의 총액의 한도액을 法定化하고 그 억제를 도모한 점, ②刑罰의 강화외에 선거권의 정지와 후보자가 스스로 범한 경우에는 당해선거구로 부터 영구히 선거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腐敗行爲에 대한 制裁를 강화한 점, ③선거재판과 형사재판의 연대등 訴訟制度를 더욱 정비한 점 등이다. 나아가 실제의 법안이 성안되기 까지 마지막까지 대논쟁을 초래한 하나의 핵심이 있었으며, 그것은 매우 광범위한 連坐制이다. 이 연좌제에서는 후보자의 「代理人」¹³⁾이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의 當選이 무효로 될 뿐만 아니라 候補者自身은 당해선거구로 부터 일정기간 선거될 수 없도록 하였다. 앞서의 세가지 사항과 이 連坐制가 1883년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최대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13) 여기에서 代理人이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후보者本人에 대신하여 선거운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관념은 그 후의 判例에서 통상의 運動員이외의 자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자가 代理人으로 되었다.

2.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構成과 特徵

이 법은 全文 70개조와 5개조의 附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내용의 요약	
부폐행위	유형	매수, 향응, 부당억압, 대리투표
	형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대리투표를 제외한 부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이하의 중노동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구금형 또는 200파운드이하의 벌금 ②대리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이하의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
	자격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후보자가 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응, 부당억압을 스스로 범하거나 그 이외의 부폐행위를 스스로 범하거나 범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당선무효 또한 당해선거구로 부터 영구히 선거될 수 없다. ②후보자의 대리인이 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는 당선무효, 또한 후보자는 당해선거구로 부터 7년간 선거될 수 없다.
위법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선거인의 운송비용의 지출, 허용된 수를 초과하는 위원회실을 위한 비용의 지출 등), 투표가 금지되어 있는 자가 투표하거나 그를 투표시키는 것, 다른 후보자의 허위 입후보사퇴제출 ②후보자·선거사무장에 의한 선거운동비용의 한도 초과 ③후보자·선거사무장이 위법지불·위법고용·위법 임대차를 범한 것
	형별	100파운드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후보자가 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무효이며 또한 7년간 당해선거구로 부터 선거될 수 없다. ②후보자의 대리인이 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는 당선무효이며 또한 후보자는 당해의 회기중 그 선거구로 부터 선거될 수 없다.

유형	내용의 요약
후보자의 면책	<p>향응·부당억압·위법행위에 관해서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이를 범하여도 다음의 사항을 증명한 때에는 후보자는 당선무효 및 자격정지가 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후보자도 선거사무장도 부패행위·위법행위를 범하지 않고 당해행위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명령에 반하여 허가 없이 행해진 것 ② 후보자, 선거사무장이 부패행위·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 것 ③ 당해행위가 미세하고 한정적인 것 ④ 다른 모든 점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장이 부패행위·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
선거운동 비용	<p>이 법률에서 최초로 선거운동비용의 한도액이 도입되었다. 그 액수는 다음과 같으며, 종래의 선거운동비용의 실적액수에 비해 매우 소액이다.</p> <p>도시선거구(아일랜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0파운드 + 2천인을 초과하는 선거인 1천인에 대해 30파운드(선거인이 2천인이하의 경우는 350파운드) <p>지방선거구(아일랜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0파운드 + 2천인을 초과하는 선거인 1천인에 대해 60파운드(선거인이 2천인이하의 경우는 650파운드) <p>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비용의 명세를 포함한 보고서를 선거결과의 확정후 35일이내에 선거사무장이 치안판사의 면전에서 행한 선서서를 첨부하여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선거운동비용의 지출방법에 관해서도 선거사무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p>
선거소송	<p>선거소송에 관해서도 가능한 한 매일 계속하여 행하게 하는 등 그 절차가 정비되었다.</p> <p>선거소송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된 부패행위·위법행위의 형사소추에 관하여 검찰총장 및 그 부하·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당선소송과 현사재판의 연대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였다</p>

또한 이 法律의 주요 特徵으로는 다음의 6가지 事項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選舉腐敗를 腐敗行爲(Corrupt Practices)와 違法行爲(Illegal Practices)로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에 명확한 定義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前者는 그 행위가 어느 候補者에게 투표시킬 목적으로 행해졌

기 때문에 不正이 되는 행위이며, 행위자체의 성질상 선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부패한 행위가 있고 동시에 選舉에 연결되기 때문에 腐敗行爲가 되며 그 행위의 時期如何에 관계없이 문제된다. 後者에 있어서는 選舉運動의 비용과 방법을 제한하고 선거에 수반하여 당연히 행해지는 행위중 정도가 法에 위반되는 行爲로서, 선거와 밀접히 연결되는 점에서 보통 選舉期間內의 행위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한 선거운동으로서 인정되는가를 정한 것으로 選舉自體에 대한 統制가 직접 문제 가 되는 것이다.

둘째, 選舉訴訟의 심리에 즈음하여 향응이나 부당억압이외의 腐敗行爲의 罪가 후보자자신, 또는 후보자의 故意의 승인하에 범하여 졌다고 보고된 경우 또는 향응, 부당억압의 죄가 候補者自身에 의해 범해졌다고 보고된 경우에는 그 候補者は 영구히 下院議員에 선거될 資格이 없게 된다는 점이다.

세째, 선거소송의 심리에 즈음하여 候補者の 代理人에 의해서 부패행위의 罪를 범했다고 보고된 경우에는 候補者は 7년간 下院議員에 선거될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네째, 腐敗行爲 때문에 기소되어 有罪宣告를 받은 자는 선고일로 부터 7년간 國會議員選舉와 본 법의 범위에 속하는 公職選舉를 불문하고 영국에 있어서 모든 選舉에서 선거인으로서 등록되거나 투표를 할 자격을 상실하며, 또한 公職 또는 司法職에 취임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다섯째, 選舉費用의 최고한도액(법정선거비용)제도를 도입하여 1인의 選舉責任者(출납책임자)에게 후보자의 選舉費用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罰金을 부과하고 선고일로 부터 5年間 선거인으로서 登錄되거나 투표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여섯째, 선거소송을 신속하게 또한 실효적으로 하기 위하여 裁判制度의

개선을 도모한 점이다. 특히 커다란 특징은 選舉訴訟의 起訴(원고)를 檢察總長(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의 책무로 한 점이다. 또한 낙선된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①當選者가 피선거자격이 없을 때, ②選舉運動·投票 및 計票에 있어서 어떤 부정이 있을 때, ③당선자에게 選舉法違反이 있을 때 無效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그 소송이 당선자의 피선거자격 문제라면 下院이 그 문제를 결정하고, 또한 腐敗·違法行爲라면 그 소송은 高等法院의 刑事裁判部(The King's Bench Division of the High Court of Justice)의 2인의 판사에 의하여 심리된다. 심리결과가 하원에 보고되면 소송사건의 결과는 決定된다.

IV.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效果

영국의 부패선거도 1883년의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 시행의 30년후에 완전히 일소되었다. 이 때문에 동법은 끊임없이 選舉淨化의 모델로 추앙되는 한편 각국에서는 동법을 모델로 한立法措置를 강구하는 등 선거관련입법에 많은 영향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同法의 제정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선거부패가 완전히 一掃되기에 이르던 그 성공의 비밀에 관심이 향해지고 있다. 이하 이 점에 관해 參考가 되는 몇가지 사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오랜동안의立法措置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선거부패가 하나의 法律에 의해서 갑자기 일소되었다는 자주 묘사되는 구도가 어디까지 올바른가라는 문제가 있다. 부패의 실태의 소개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事例가 열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종종 당시의 부패에 관하여 과도한 이미지를 가져버린 경우가 있다. 1880년의 총선거가 당시에는 사상최대의 부패선거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선거기간중에는 腐敗行爲가 거의 없었으며, 선거

후 제기된 선거소송도 658議席에 대해 42건이며, 심리된 것은 28건에 불과하였다.¹⁴⁾ 또한 직접매수에 관해서는 1858년 腐敗行爲防止法에서 이미 그 나름대로 유효하게 방지되었던 점은 언급하였다. 그런데 양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진 부패는 고용명목 등의 間接買收였으며, 앞서의 法務長官의 취지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83년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이 첫번째 목표로 한 것도 이 간접매수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입법상의 노력은 그 나름대로 成果를 거두었으며, 이 法律은 마지막까지 존재하였던 몇가지 종류의 부패를 一掃하는데 불과하였다고도 말한다. 즉 이 법을만으로 모든 부패가 한꺼번에 극적으로 終熄된 것은 아니다. 선거부패는 적어도 그 후의 두차례의 總選舉에도 나타났다.¹⁵⁾

둘째, 원래 선거에 있어서 「腐敗」는 의원의 지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物質的 便益의 반영이었던 점에 관해서는 언급하였으나, 그 물질적 편익이 점차 감소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官職의 획득은 엽관제(Merit System)의 발달에 의한 近代官僚制의 확립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없게 되었으며, 一般議員에 의한 私法律의 추진도 제약을 받게 되어 의원의 지위에 흥미가 감소되고 종래와 같은 利權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당시의 다수의원에게는 선거에서의 높은 費用이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세째, 두번째와도 관련하나 議員의 출신계층이 高費用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 아니었다. 이미 언급한 法務長官의 연설에서는 富者만 의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나, 당시의 富者(정확하게는 종래 부패선거를 행하였던 부자)란 土地所有者(귀족 등)이며, 그들은 산업혁명의 진전과 穀物條

14) Cornelius O'Leary, op.cit., p.129.

15) Alan R.Ball, 「British Political Parties」, London(The Macmillan Press), 1981, p. 20.

례의 철페 등 커다란 시대의 흐름을 배경으로 특히 1870년대이후의 안정된 外國穀物의 유입과 冷藏技術의 발달에 따른 곡물가격의 하락으로 급속히 몰락하였다.¹⁶⁾ 그 결과 새로이 출현한 議員의 출신계층은 종래의 부패선거의 高負擔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당연히 당선을 위한 費用의 억제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즉 영국의 選舉腐敗는 원래 이 시대에 몰락한 계층의 산물이며,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새로이 탄생한 계층은 새로운 政治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政黨制度의 발달에 있다. 정당의 조직은 1832년과 1867년의 選舉法改正에 따른 유권자의 확대에 수반하여 발달하였으며, 1867년에는 保守黨의 전국조직이 1877년에는 自由黨의 중앙조직이 정비되고 또한 지방차원의 조직정비도 추진되었다. 1880년의 總選舉에서 선거운동비용의 총액이 팽창한 것은 바로 이 정당제도의 발달에 수반한 對立候補가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同年의 총선거는 政黨黨首에 의한 전국유세가 행해진 최초의 선거이기도 하며, 選舉戰은 정당본위의 것으로 그 양상이 변모하여 갔다.¹⁷⁾ 전술한 것처럼 일부에서는 정당조직이 부패의 온상으로 되었으나, 근대적 政黨의 실질이 정비되어감에 따라 사정은 다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1883년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은 의원의 지위를 얻는데 다수의 물질적 편익을 수중에 넣을 수 있고, 따라서 당시의 富者인 토지소유자가 주로 그 子弟를 의회로 진출시키기 위하여 高額의 비용을 부담한 시대에서 사람들이 政策本位로 단결하여 스스로 자원하는 인물을 議會에 보낸다는 政黨中心의 시대로의 移行期에 제정된 법률이었다. 물론 이 법률 자체가

16) M. P. Duschinsky, op.cit.,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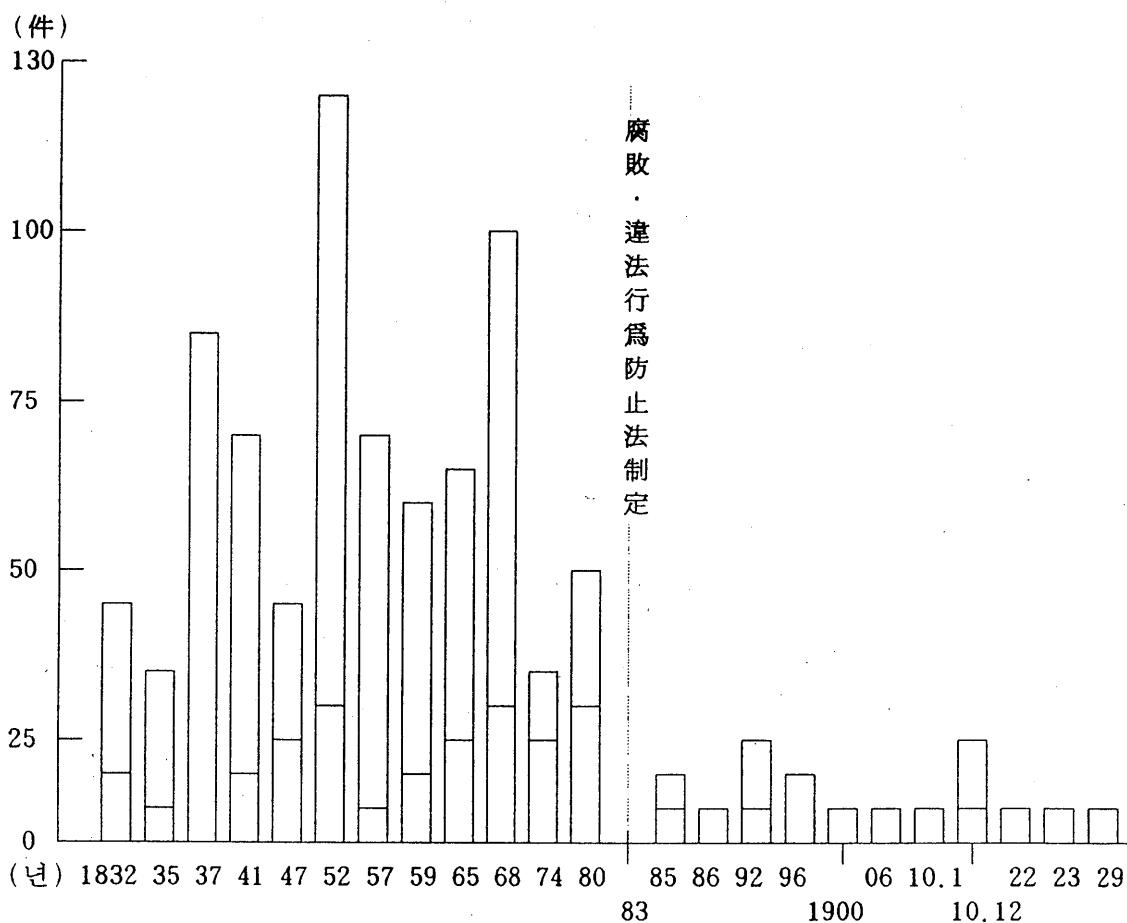
17) Cornelius O'Leary, op.cit., p.158.

選舉의 방식을 변화시켜 종래의 정치의 중심계층의 몰락을 촉진시킨 효과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듬해의 총선거직전인 1885년에 議席再分配法이 제정되어 정당본위의 선거제도인 小選舉區制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도입된 것도 이들의 흐름을 결정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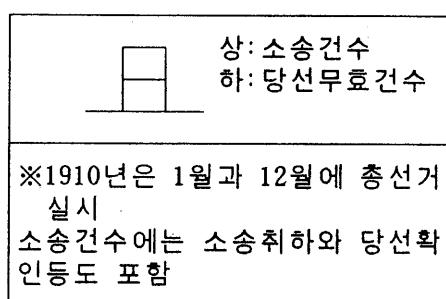
여하튼 위반한 경우의 엄격한 資格停止나 광범위한 連坐制 등 이미 서술한 부패방지를 위한 동법의 다양한 내용 및 일단 정해진 法定限度額을 준수하고 있는 英國議員의 의식수준은 매우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이 法律의 제정에 의해서 아래의 圖表에서 보듯이 選舉犯罪는 영국에서 대폭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選舉訴訟은 1968년 7월에 제정된 議會選舉法(The Parliamentary Election Act)에 의해서 의회로 부터 法院으로 옮겨졌다. 이후 현재까지 런던에 있는 高等法院(High Court)의 王座部가 임명하는 2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法院(Court of Common Pleas)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裁判件數는 감소하고 지금은 조금 과장한다면 開店休業狀態에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1883年法에 의해서 의무화된 選舉費用報告書의 제출은 현재에도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 報告書는 下院議院 圖書館에 보관되어 의원의 상호감시하에 議員이면 누구라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이 法律은 영국의 「國民代表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에 상당 부분이 흡수·통합되어 繼承되고 있다.¹⁸⁾

18) 英國의 선거법인 國民代表法은 1949년에 성립하였으며, 그 후 몇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1978년 유럽議會議員選舉法(European Assembly Elections Act 1978)의 제정과 관련하여 1983년 全面改正되고, 그 후 1985년 및 1990년에 다시 부분적으로 改正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세한 것은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英國의 國民代表法」, 立法參考資料 제100호, 1969 ; 法制處, 「各國의 選舉關係法」, 法制資料 제112호, 1980 ; 中央選舉管理委員會, 「英國國民代表法」, 1988 등 參照.

【英國總選舉에서의 選舉訴訟件數와 當選無效件數】¹⁹⁾



<참고>



19) 이 도표는 日本 每日新聞 1992년 11월 4일자記事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附錄 - 1〉 1883年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 全文

第 1 章 腐敗行爲(Corrupt Practice)

- 제1조 (饗應 :Treating) (1) 선거전 · 중 · 후를 막론하고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자 또는 기타의 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또한 어떠한 자 또는 기타의 자가 투표하였거나 투표하지 아니 하였거나 투표할 예정이었거나 또는 투표하지 아니할 예정이었다는 사유로, 어떠한 자에게 또는 어떠한 자를 위하여 육류, 음료, 향응, 식료품 또는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기자신이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여 또는 지불하게 한 자는 향응의 죄로 처벌한다.
- (2) 부정하게 육류, 음료, 향응 또는 식료품을 수취하였거나 이에 응한 모든 선거인도 향응의 죄로 처벌한다.

- 제2조 (不當한 影響力 : Undue influence)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자를 권유 또는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어떠한 자가 투표하였거나 또는 투표하지 아니한 사유로 직접 · 간접으로 자기자신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 자에게 강제력, 폭력의 행사, 감금 및 가해의 협박을 하거나 정신적 · 물질적인 위해나 손실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자는 부당한 영향력행사의 죄로 처벌한다. 유괴, 강박, 위계, 사술 등 의 방법으로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거권행사를 방해저지하는 자 및 선거인에게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 아니하도록 강요, 권유 또는 설득을 하는 자도 부당한 영향력행사의 죄로 처벌한다.

제3조 (腐敗行爲 :Corrupt Practice) 이 법에서 “부패행위”란 이 법에서 정한 향응, 부당한 영향력행사 또는 제3장에 규정한 증수뇌 및 신분사칭을 말한다. 또한 이법의 부칙 제3항에 의한 신분사칭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 상담 또는 주선하는 행위 및 모든 위반행위는 1868년 의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부패행위가 된다.

제4조 (腐敗行爲로 起訴된 候補者의 處罰 : Punishment of Candidate found on election petition, guality personally of corrupt practices) 1868년 의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또는 지방지역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에서 의장에게 제출된 선거법원의 보고서에 당해 선거에서 향응이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가 아닌 부패행위가 후보자의 인식과 동의하에 범해졌다고 보고된 경우, 또는 향응이나 부당한 영향력행사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에 의하여 범해졌다고 보고된 경우, 그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으며 당해 선거구를 위하여 하원에 출석할 수 없다.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되며, 부패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代理人의 腐敗行爲로 有罪判決을 받은 候補者의 處罰 : Punishment of candidate found on election, guality by agents of corrupt practices) 당해선거에서 부패행위를 범한 선거구 또는 지방지역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에 대한 선거법원의 보고에 의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대리인의 부패행위로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으며, 보고가 있는 날로부터 7년동안 선거구 및 지방정부지역에서 하원으로 출석할 수 없다. 또한 비록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6조 (腐敗行爲로 有罪判決을 받은 者의 處罰 : Punishment of person

convicted on indictment of corrupt practices) (1) 신분사칭 이외의 부패행위를 범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 상담 또는 주선하는 자는 경범 죄가 되며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신분사칭, 방조, 교사, 상담 또는 주선한 죄를 범한 자는 중죄가 되며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a)의회의원선거 및 공직선거를 막론하고 연합왕국의 선거에서 선거인으로 등록될 수 없고 투표할 수 없으며, (b)어떠한 공직이나 사법직도 이를 보유할 수 없다. 만일 위와 같은 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날로부터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4) 의회의원선거에서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당선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후 5년동안 하원에 출석할 수 없으며, 비록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은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第 2 章 違法行爲(Illegal practices)

제7조 (違法的인 金錢支給 : Certain expenditure to be illegal practice)

(1) 선거시 어느 후보자의 당선을 조장 또는 주선할 목적으로 (a)우마차, 철도 또는 기타의 수송수단을 임대하여 투표소까지 또는 투표소로부터 선거인을 수송하거나, (b)선거인에게 유세장, 벽보 또는 공고를 위해 주택, 토지, 건물 또는 공고장소를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금전지급 또는 지급계약도 금지된다.

- (2) 이 법이 허용하는 예외가 있더라도,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이 법에 위반하여 어떠한 금전지급 또는 지급계약을 고의로 체결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이나 금전지급의 계약을 행한 자는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또한 그 금전의 지급을 수취하거나 그 계약에 가담한 자도 역시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 (3) 광고업자로서 금전지급을 받고 벽보와 광고물을 전시하는 것이 그의 통상적인 업무이며, 그 금전지급이나 계약이 이러한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 (違法한 超過金錢支出行爲 : Expense in excess of maximum to be illegal practice) (1) 이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은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당해 선거의 실시나 관리를 이유로 하여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칙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어떠한 금액도 지출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비용의 지출도 수반될 수 없다.

- (2)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한다.

제9조 (違法的인 候補辭退의 虛偽陳述 : Publishing of false statement of withdrawal to be illegal) (1) 선거전 또는 선거중에 어느 후보자의 당선을 조장 또는 주선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후보사퇴의 허위진술을 공표하는 자는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한다.

- (2) 후보자는 그의 선거사무장이 아닌 다른 대리인에 의하여 범하여진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의 당선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제10조 (違法行爲의 有罪判決 : Punishment on conviction of illegal practice) 전술한 항 및 이 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약식재판에서 1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행위를 범한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선거인으로 등록되지 못하며 어떠한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제11조 (違法行爲에 대한 選舉法院의 報告書 : Report of election court respecting illegal practice) 1868년 의회의원선거법 제11조 제14항의 부폐행위를 이 법에서 위법행위로 대체하여 재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의 선거소송에서 선거법원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며, 당해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가 그의 선거사무장에 의한 위법행위로 유죄처벌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보고한다. 의장에 대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선거법원의 보고서에는 당해 선거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후보자의 인식과 동의하에서 범해진 것인지의 여부, 그 경우 당선될 수 없으며 그 보고가 있는 다음 날로부터 7년동안 당해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의 하원에 출마 할 수 없다는 사실,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이 무효가 되며 보고한 당일에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상실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고, (b) 보고서에는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의 대리인에 의한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의 의회의원 임기동안 전술한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의 하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2조 (違法行爲에 대한 選舉委員의 役割 : Extension respecting election commissioners to illegal practices) 1852년 선거위원법 및 개정법률에 따라 임명된 선거위원은 전술한 법과 개정법률에서 "부폐행위"가 위법행위를 포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할 수 있다. 1852년 선거위원법은 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수정되며 1852년 법에서 "부폐행위"는 이 법에서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

第 3 章 違法的 報酬支給 · 雇用 · 貸借(Illegal Payment, Employment, and Hiring)

제13조 (違法行爲에 대한 金錢提供 또는 違法的 報酬支給 : Providing of money for illegal practice or payment to be illegal payment) 고의적으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보수의 지불 또는 이 법에 의하여 허용된 최고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또는 이 보수지불 내지 비용에 지출한 금전의 충당을 위하여 금전을 제공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법적인 금전지출죄로 처벌한다.

제14조 (輸送馬車의 貸借 : Employment of hackney carriages, or of carriages and horses kept for hire) (1) 어떠한 자도 선거인을 투표소까지 또는 투표소로부터 수송할 목적으로 공동마차, 전세마차 및 기타의 차량을 대여·임대 또는 운행시킬 수 없다. 위 수송수단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한 자는 위법임차의 죄를 구성한다.

(2) 어떠한 자도 선거인을 투표소까지 또는 투표소로부터 수송하기 위하여,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대여·임대 또는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차량소유자는 공동마차·전세마차 또는 기타의 차량을 임차·대용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행한 자는 위법임대차의 죄를 구성한다.

- (3) 어떠한 규정도 선거인 또는 다수의 선거인들이 투표소까지 가거나 투표 소로부터 돌아오기 위하여 그들의 공동부담으로 차량을 전세, 임차, 운행 또는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4) 어떠한 자도 선거인을 투표소까지 또는 투표소로부터 수송하기 위하여 금전지급이나 지급약속없이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제15조 (候補者의 不正辭退 : Corrupt withdrawal from a candidature) 보수의 지불 또는 지불약속 등 매수행위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도록 타인을 권유하였거나 주선한 자 및 권유 또는 주선에 의해 후보직을 사퇴한 자는 위법행위의 죄를 구성한다.

제16조 (違法的인 報酬支拂 : Certain expenditure to be illegal) (1)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거나 주선할 목적으로 악대, 횃불, 기, 포스터를 사용한 이유로 보수지불 또는 지불계약을 할 수 없다.

(2) 이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의 지불 또는 지불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법적인 금전지불의 죄를 구성한다. 또한 그 금전지불을 수취하거나 계약에 가담한 자는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위법적인 보수지불의 죄를 구성한다.

제17조 (違法的 雇庸 : Certain employment to be illegal) (1) 어떠한 자도 선거시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거나 주선할 목적으로 보수의 지불 또는 지불계약의 약속 및 고용이 금지된다.

(2) 이 법에서 허용되는 예외가 있더라도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어떠한 자가 제1항에 위반해서 고용된다면 고용한 자 및 고용된 자는 위법고용의 죄로 처벌한다.

제18조 (選舉關係發行物에 印刷業者의 姓名 및 住所記載 : Name and address of printer on placard) 선거에 관련된 벽보, 플래카드, 포스터의 표면에는 인쇄업자와 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 광고물의 표면에 인쇄업자 및 발행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자는 그가 후보자이거나 선거사무장이거나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하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아닌 자는 약식재판에서 1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債權者의 救濟 : Saving for creditors) 이 법에서 보수지불 및 지불계약 그리고 이 법에서 허용된 최고한도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의 지출 및 부담을 금지하는 규정은 당해 계약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때 그 계약 또는 비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酒類 또는 飲料 販賣店 및 國民學校의 集會室 使用과 違法的인 貸借 : Use of committee room in house for sale of intoxicating liquor or refreshment, or elementary school, to be illegal hiring)
(a) 도매 또는 소매로 주류의 판매가 면허로 허용된 장소 (b) 주류판매장소 및 정치적 기관 이외의 클럽 또는 사회조직체에 제공된 장소 (c) 음식 내지 음료를 소비용으로 판매하는 장소 (d) 매년 의회의 혜택을 받는 공립 국민학교나 그런 장소의 일부 등은 선거시 후보자의 당선을 조장하거나 주선할 목적으로 유세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만약 어떠한 자가 그 장소 및 장소의 일부를 유세장으로 임대차하거나 또는 이용한다면

그는 위법적인 임대차의 죄를 구성하며, 그 장소가 유세장으로서 사용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 또는 일부를 임대해 준 자도 역시 위법적인 임대차의 죄를 구성한다.

제21조 (違法의인 報酬支拂, 雇用, 貸借의 處罰 : Punishment of illegal payment, employment, or hiring) (1) 위법적인 보수지불, 고용, 임대 차의 죄를 범한 자는 약식재판에서 1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인적으로 위법적인 보수지불, 고용, 임대차를 범한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은 위법행위의 죄를 구성한다.

第 4 章 腐敗行爲, 違法行爲 또는 違法의인 報酬支拂 · 雇用 · 貸借의
確定 및例外 (Excuse and Exception for Corrupt or Illegal
Practice Illegal Payment, Employment or Hiring)

제22조 (代理人의 腐敗行爲 또는 違法行爲에 대한 候補者의 免責報告書 : Report exonerating candidate in certain cases of corrupt and illegal practice by agents)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의 선거청원에 관한 심판에서 선거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경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기타의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보고되고, 당해 후보자가 다음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였다고 보고된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의 당선은 보고서에서 언급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후보자는 어떠한 자격도 상실되지 아니한다.

(a) 어떠한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도 당해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에 의하여 범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이 보고서중에 기재된 범죄는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의 지시에 반하여 행해졌고 승인 또는 묵인없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

- (b) 당해선거에서 후보자 및 그의 선거사무장이 부폐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다는 사실
- (c) 보고된 범죄행위가 경미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부분적 성격을 띠었다는 사실
- (d) 모든 다른면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와 그의 대리인측에 부폐행위 또는 위법행위가 전연 없었다는 사실

제23조 (違法行爲로 부터 救濟할 수 있는 高等法院 및 選舉法院의 權限 :

Power of High Court and election court to except innocent act from being illegal practice) 제기된 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 및 선거법원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이 법원에 입증된 경우와 법원이 제반사정상 그 후보자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그 작위나 부작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작위나 부작위를 위법행위, 위법지불, 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를 규정한 이 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누구라도 이 명령이 있은 후에는 그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a)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이 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위법행위, 위법지불, 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가 된다는 사실
- (b) 작위 또는 부작위가 부주의나 우연한 오판 기타 이에 준하는 다른 합리적 사유에 의거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든지 불성실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c)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신청통지를 당해 선거가 실시된 선거구 또는 당해 지방정부지역에 제출하였다는 사실

第 5 章 選舉費用(Election Expenses)

제24조 (選舉事務長의 任命 : Nomination of election agent) (1) 선거사무장은 선거지정일 또는 그 전에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는 자가 지명한다.

- (2) 후보자는 자신을 선거사무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정이 허락하는 한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으로서의 양자의 지위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 이 법 중 선거사무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선거사무장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선거지정일 또는 그 전에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성명 및 주소는 당해 후보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가 관계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4) 선거사무장은 각 후보자에 대하여 1인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명은 임명된 선거사무장이 후보자 자신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선거사무장의 임명이 취소되거나 선거사무장이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다른 선거사무장을 임명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選舉副事務長의 任命 : Nomination of deputy election agent as sub-agent) (1) 이 법의 부칙 제1조에 따라 특정한 선거의 경우에 후

보자의 선거사무장은 당해 선거구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사무장(이 법에서 부사무장은 sub-agent로 칭한다)의 수를 정할 수 있다.

- (2) 부사무장이 있는 선거구의 사무에 관하여는 부사무장이 선거사무장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법의 목적상 당해 선거구내에서 부사무장에 의하여 행해진 행위나 부사무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를 선거사무장이 한 행위로 간주한다. 부사무장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그가 선거사무장이었다면 위법행위 또는 기타 이 법에 의한 위법행위가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는 부사무장에 의하여 행해진 위법행위 또는 이 법의 위법행위로 보며, 당해 부사무장은 그에 따라 처벌된다. 이 경우 당해 후보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선거사무장이 스스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었던 것과 동일하게 그 자격을 상실한다.
- (3) 선거사무장은 투표일전에 모든 부사무장의 성명과 주소를 관계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관계공무원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4) 부사무장의 임명은 그를 임명한 선거사무장이 사임한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경우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부사무장의 임명이 취소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부사무장을 임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성명과 주소를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選舉事務長 및 副事務長의 事務所 : Office of election agent and sub-agent) (1) 모든 선거사무장 및 부사무장은 모든 청구·통지·영장·소환장 및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사무소를 가져야 한다. 사무소의 주소는 당해 선거사무장 및 부사무장의 임명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에게 신

고하여야 하며, 그 성명이 즉시 공고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소는 지방 정부지역이나 그 선거구 또는 인접한 지역안에 소재하여야 한다.

- (2) 모든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에게 배달된 청구·통지·영장·소환장 및 문서는 그의 사무소에 전달되는 경우 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은 당해 선거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選舉事務長을 통한 契約의 締結 : Making of contracts through election agent) (1)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스스로 또는 부사무장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를 대리하여 모든 투표참관인, 유급서기 및 유급연락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각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다.

- (2) 선거행위 및 관리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은 그것이 후보자자신이나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닌 한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행할 수 없다. 다만 그 계약체결에 대한 후보자의 주의부족은 그의 대리인이 행한 부패 및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해 후보자에게 면제시키지 아니한다.

제28조 (選舉事務長을 통한 費用의 支出 : Payment of expenses through election agent) (1) 이 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시 후보자 및 그의 대리인 또는 기타의 자는 선거의 전·중·후 어느 때를 막론하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 의하거나 선거사무장을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에 관한 어떠한 지출·대출 또는 저축도 할 수 없다. 기부금·차용금·대출금·저축 등 선거관리를 위해 발생한 모든 경비에 대해서 후보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합법적으

로 지출이 수반된 소액비용을 자신의 사재에서 지출하고 이를 환급받지 못한 자의 경우, 그 소액비용에 대해서는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지출, 대출 또는 저축하거나 전기와 같이 제공된 금전을 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출한 자는 위법 행위의 죄를 구성한다.

제29조(選舉費用에 대한 請求書의 送付 및 請求期間 : Period for sending in claims and making payments for election expenses) (1) 선거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이 행한 모든 지출은 40실링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서 및 영수증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 이 법에서 제한한 기간내에 선거사무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선거비용에 관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금지하며 지불할 수 없다.

(3) 이 법에서 허용되는 예외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허용하는 청구서 송부 기간은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4) 후보자를 위한 모든 선거비용은 이 법에서 허용한 기간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예외가 있더라도, 이 규정에 위반해서 지불한 선거사무장은 위법 행위로 처벌한다.

(5) 이 법에서 허용되는 예외가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선거비용의 지불허용기간은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이다.

(6) 어떠한 지불이 당해 후보자의 승인 또한 묵인없이 선거사무장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사실을 당해 후보자가 선거법원에서 입증하고 선거법원이 이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지불이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후보

자가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상실당하지 아니한다.

- (7) 이 법에서 허용된 기간내에 송부된 청구에 대하여 선거사무장이 그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28일의 기간내에 지불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그 청구는 이의있는 청구로 본다.
- (8) 청구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있는 청구에 대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하여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이 지불한 모든 비용은 이 법의 허용기간내에 지불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의 규정에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청구는 선거사무장에 의해 지불된 것으로 본다.
- (9) 청구자 또는 후보자나 그의 선거사무장은 그 청구가 14일의 기간후에 송달되거나 선거사무장이 아닌 후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선거비용의 청구에 대한 지불허가를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령으로 지불허가를 할 수 있다.
- (10)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허가명령에 지시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또한 허가에 따라 지불된 때에는 이 법에서 허용한 기간내에 지불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候補者에 대한 請求推尋에 관한 事項 : Reference to taxation of claim against candidates) 청구자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하여 이의있는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에서의 피고가 자기의 채무를 인정하나 그 청구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다른 명령를 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금액은 추심을 위하여 즉시 당해 법원의 서기, 등록관 또는 기타의 관계공무원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추심될 액으로 결정한 금액이 그 청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변제받을 금액으로 한다.

제31조 (候補者의 個人費用 및 雜費 : Personal expenses of candidate and petty expenses) (1)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1백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선거에 기인하거나, 당해 선거에 관련하거나 또는 선거에 부수되어 지출이 수반되는 개인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상 지출이 수반되는 개인비용은 선거사무장이 지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제한된 기일내에 전항의 지출한 개인비용의 액수를 서면으로 그의 선거사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그 권한 위탁시에 지정된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문구류구입대금, 우편요금, 전신요금 및 기타의 잡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4)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지출한 지출명세서는 이 법에 의하여 제한된 기일내에 당해 선거사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포함한 계산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제32조 (選舉事務長의 報酬 및 選舉公務員의 費用 : Remuneration of election agent and returning officer's expenses) (1) 이 법은 사정이 허용하는 한 선거사무장의 보수청구 및 그 지불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인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적용한다. 청구액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이 법 소정의 이의있는 청구로서 처리된다.

제33조 (選舉費用에 관한 報告 및 申告 : Return and declaration respecting election expenses) (1) 선거결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당해 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이 법의 부칙2에 규정된 양식 또는 동일취지에 따른 양식으로 된 정식보고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식보고서는 당해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선거사무장이 지출한 총지출액의 명세서와 모든 청구서 및 영수증(즉, 이 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에 포함되는 청구서 및 영수증)
 - (b) 후보자에 의하여 지출된 개인비용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관한 명세서
 - (c) 선거사무장이 알고 있는 모든 이의있는 청구
 - (d) 선거사무장이 알고 있는 고등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미지급청구액이 있는 경우 그 모든 미지급청구액의 명세서
 - (e) 지급이 수반되었거나 수반될 선거비용을 위하여 후보자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선거사무장이 받은 모든 금전, 유가증권, 금전등가물의 명세서 및 이를 증여한자의 성명
- (2) 관계공무원에게 제출된 보고는 이 법의 부칙2(이 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신고와 관련된 것)의 양식으로 치안판사앞에서 선거사무장에 의한 보고를 필요로 한다.
- (3) 후보자 자신이 선거사무장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서에는 당해 후보자가 지출한 모든 금전, 유가증권 및 금전등가물의 명세서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사무장이 받은 금전, 유가증권 및 금전등가물의 명세서로 대응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에 관한 선거사무장의 보고서는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선거비용에 대한 후보자의 신고서는 부칙2에 규정된 양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정작성되어야 한다.
- (4) 선거사무장이 동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또는 그 후 7일 이내에 후보자는 이 법의 부칙2의 1항에 규정된 양식으로 치안판사앞에서 그가 작성한 신고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어느 후보자이든지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서 및 신고서가 제출기한의 만료일이 전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고서 및 신고서가 제출될 때

까지 또는 그 보고서 및 신고서의 제출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면책사유의 인정을 받는 날까지, 당해 선거가 실시된 선거구의 하원의원으로서 하원에 출석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 또는 투표한 경우에는 매출석 또는 투표일수에 따라 1백파운드를 강제 징수한다.

- (6) 이 법에서 언급한 정당한 면책사유 없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이 규정의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 (7)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서를 고의로 허위작성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 (8) 보고서의 제출시에 후보자가 영연방국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신고서는 그가 영연방국으로 귀환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는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고의 자연은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와 신고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선거사무장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9)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고등법원이 청구에 관하여 지불 허가를 한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은 그 지불 후 7일 이내에 그 허가에 따라 지불된 액수에 관한 보고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허가를 부여한 법원의 명령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이 의무를 이 법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필요요건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選舉費用의 報告 및 申告의 不履行에 관한 公認된 免責事由 :

Authorized excuse for non-compliance with provision as to return

and declaration respecting election expenses) (1) 선거시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 및 신고서가 이 법의 요건대로 제출되지 않거나 오기 및 허위기재로 제출된 때, (a) 후보자가 고등법원 및 선거법원에 신청해서 보고서 및 신고서의 제출불이행, 오기, 허위기재가 후보자의 질병 및 선거사무장이나 부사무장 또는 이들 사무원의 부재, 사망, 질병 또는 과오로 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그리고 부주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합리적 이유로 인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만 신청자측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b)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고등법원 및 선거법원에 신청해서 요건에 필요한 보고서 및 신청서의 제출불이행, 오기, 허위기재가 그의 질병 및 당해 후보자의 전임 선거사무장의 사망이나 질병 또는 과오로 인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리고 부주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합리적 이유로 인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만 신청자측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에서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청통지가 있은 후에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와 신청서의 성실성에 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불이행, 오기 또는 허위기재에 관한 공인된 면책을 허가하기 위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의 보고서 및 신고서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는 보고서 및 명세서의 작성, 제출을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인 자가 거부하였거나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전조에 의하여 면책사유를 허용하는 명령을 하기 전에, 그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법원은 해당자가 출석하여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당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법원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양식으로 보고서 및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계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명세서에 관하여 검사를 받도록 출석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수정된 양식 또는 연장된 기간내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법원이 최선의 것이라고 산정하는 기타의 기간을 준수하여 보고서와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책사유를 허용하는 명령은 당해 명령에 의하여 면책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책임이나 결과로 부터 신청자를 구제할 수 있다. 또한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 및 신청서와 관련해서 선거사무장의 작위 및 부작위가 후보자의 승인 및 확인 없이 행하여졌다는 것과 그런 작위 및 부작위를 방지하려고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을 후보자가 법원에서 입증한 경우, 법원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행한 작위 및 부작위의 결과로 부터 후보자를 구제할 수 있다.
- (4) 명령일자 또는 조건과 기간이 이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가 이를 완전히 이행한 일자를 이 법에서 면책을 허가한 날로 본다.

제35조 (選舉費用에 관한 報告書 및 要旨書의 公告 : Publication of summary or return of election expenses) (1) 의회의원선거에서 관계 공무원은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당해 선거가 실시된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에 보급되고 있는 2개 이상의 신문에 열람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

결과개요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2) 관계공무원에게 제출된 보고서 또는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는 그 공무원의 사무소 또는 그가 지정하는 편리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하며, 수령 후 2년 동안 적당한 기간에 1실링의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 2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관계공무원은 위 보고서 및 신고서를 폐기할 수 있다. 또한 당해 후보자 및 그의 선거사무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第 6 章 選舉人의 資格喪失(Disqualification of Electors)

제36조 (腐敗 및 違法行爲者의 投票禁止 : Prohibition of persons guilty of corrupt or illegal practices from voting) 선거시 부패 및 위법 행위 또는 위법고용·지급·임대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으며, 만약 투표권을 상실한 자가 투표한 경우 그 투표권 행위는 무효가 된다.

제37조 (資格喪失者의 投票禁止 : Prohibition of disqualified persons from voting) 이 법 및 부폐행위법·시자치구법의 제4장 또는 공직선거시 부폐행위를 금지한 법률 등에 의해 의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에서 또는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만약 투표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제38조 (當事者의 意見陳述 : Hearing persons before he is reported guilty of corrupt of illegal practice) (1) 부폐 및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소송을 제기당하지 않거나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어떠한 자가 선거법원이나 선거위원회에 의하여 선거시 부패 및 위법행위의 죄를 범했다고 고발되기 이전에 사정이 허용하는 한, 선거법원이나 선거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당당사자는 의견진술의 기회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 (2) 선거시 부패 및 위법행위의 죄를 범했다고 선거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자는 그 사실에 대하여 관할 형사법원이나 교도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해 법원은 법원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청취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3) 이 장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이 형사법원에서 집행된 직할의무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대법관에게 제기되는 경우, 대법관은 전술한 이의신청 또는 그 중의 일부가 선거소송을 위해 근무명부에 등록된 재판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재판관 중 1인은 그러한 위반사실이 발생한 지방정부지역이나 관할 구역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4) 선거법원의 권한 및 비용 그리고 선거법원에의 출석 등 의회의원선거법(1868년)의 제규정은 이 장의 관련사항에도 적용된다.
- (5) 이 법의 시행후 선거시 부패 및 위법행위의 죄를 범했다고 선거법원 및 선거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면책증서의 소지여부를 불문하고 그가 죄를 범했다고 고발된 그 위반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만약 지방정부지역 또는 선거구에 관한 당선을 조사하는 선거위원회의 고발서라 하더라도 당해 선거소송의 재판에서 정당히 당선됐다고 선거법원이 판결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선된 의회의원의 재임기간동안 위의 지방정부지역 또는 선거구의 하원에

의 출석을 방해하지 못한다.

- (6) 치안판사가 선거에 관하여 부패행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선거법원과 선거위원에 의하여 고발되는 경우에는 그 면책증서의 소지여부를 불문하고 검찰총장은 당해부패행위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대법관에 그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7)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 및 기타 이에 속하는 직업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자가 선거에 관하여 부패행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선거법원에 보고되는 경우에는 그 면책증서의 소지여하를 불문하고 검찰총장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비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조학원, 고등법원 또는 전기 직업의 비행을 수리하는 법정에 당해 사건에 관해 소추를 제기하여야 한다. 법조학원, 고등법원 또는 관계법정은 그 부패행위가 직업상 이루어진 비행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다.
- (8) 면허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a)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면허의 범위내에서 중수뇌 또는 향응의 죄를 범했다고 법원에 고발된 경우에는 당해 법원은 그 위반사실을 관계면허대장에 기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b)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면허의 범위내에서 선거에 관련된 중수뇌 또는 향응을 고의로 받았다고 선거법원 또는 선거위원회에 고발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법원 또는 선거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면책증서의 소지여하를 불문하고 검찰총장은 면허당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임무이며, 당해 면허당국은 그 보고사항을 관계면허대장에 기입한다.
- (c) 면허증을 소지한 자의 유죄행위에 대하여 면허대장에 기입된 보고내용

을 근거로 면허당국은 면허 또는 증명서의 갱신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면허당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허가 거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9) 치안판사,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나 면허증 소지자가 선거에 관하여 부패행위를 범하였다는 증거가 선거위원회에게 보고되는 경우, 당해 선거위원회는 그 자격요건과 함께 위의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腐敗 및 違法行爲로 인한 投票權喪失者의 名簿 : List in register of voters of persons incapacitated for voting by corrupt or illegal practices) 모든 지방정부지역 및 자치구의 등록관은 이 법 또는 지방자치법(1882년) 제4장 또는 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기타 법률 및 공무원선거법 등의 시행후 발생하는 부패 및 위법행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관은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들의 위반사실을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 7 章 選舉請願에 대한 訴訟節次 (Proceedings on Election Petition)

제40조 (違法行爲에 대한 選舉訴訟의 提起期間 : Time for presentation of election petitions alleging illegal practice) (1)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 선거나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송은 의회의원선거법(1868년)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행위는 다음 기간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a) 당해 선거관리관이 당해 소송과 관계되는 의원 또는 선거대리인에 의하여 제출된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 및 신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

일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b) 특별한 금전지불 또는 기타 행동이 당해 선거 소송에서 심리되는 위법 행위를 조장하기 위하여 의원 및 선거대리인의 둑인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당해소송은 금전지급 및 기타의 행동이 있은 날로 부터 28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2) 당해 당선 및 선거를 무효라고 주장할 목적으로 의회의원선거법(1868년)에 의하여 제한된 기간내에 제출된 선거소송은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에 고등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정될 수 있다.
- (3) 이 장은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거비용의 보고서 및 신고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며 또한 어떠한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가 부패행위에 상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4) 이 장의 목적상 (a)보고서와 신고서를 각각 다른 날에 수령한 경우에는 그 중 최종일, (b)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책허가일 또는 둘 이상의 보고서 및 신고서에 관한 제출의 불이행에 대하여 그 면책사유가 수회에 걸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종의 면책허가일을 선거관리관이 보고서 및 신고서를 받은 날로 본다.

제41조 (選舉訴訟의 取下 : Withdrawal of election petition) (1) 선거소송의 취하를 허가하기 전에 소송관계인 전원 및 그들의 사무변호사 또한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의 지정을 요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전기의 관계인의 후보자이었던 자의 선거사무장이 작성한 구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은 구술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구술서에는 당해 선서인이 알고 또한 신뢰하고 있는 것을 성실하게

소송의 취하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나 조건 또는 약속도 행해지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의 취하에 관하여 적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구술서에 그 합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의 진술과 구술서의 기재사항은 부합되어야 한다.

- (3) 신청인과 사무변호인의 구술서에는 당해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선거소송의 취하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 및 타협 또는 약속을 한 경우, 만약 당해 합의 및 타협 또는 약속이 어떠한 금전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또는 다른 선거소송의 취하를 고려하여 이루어졌거나 또는 전기한 구술서에(적법 또는 불법을 불문하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의 자는 기소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12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5) 위 구술서의 사본은 취하신청이 심리되기 전의 합리적 시기에 검찰총장에게 제출한다. 법원은 소송취하의 허가를 반대하는 검찰총장이나 그의 보좌관 또는 기타의 대리인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그 증거보유자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를 수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
- (6) 신청된 취하가 이 장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합의, 타협 또는 약속의 결과이거나 부정거래 또는 부정보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법원은 명령에 의하여 원제소인을 위하여 공여된 담보를 대위제소인에 의해 사용될 비용에 대한 담보로서 보류할 것을 명령하며 또한 담보에 지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원제소인과 보증인이 대위제소인의 비용지불에 책임질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7) 선거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법원은 하원의장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소송의 취하가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합의,

타협 또는 약속의 결과인지 또는 어떠한 금전지급을 대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의석이나 공직을 사퇴할 것을 대가로 할 것인지 또한 다른 선거소송의 취하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만약 그렇다면 그 소송취하에 관련된 사정을 기술하여야 한다.

- (8) 2인 이상의 사무변호사가 제소인 또는 피소인을 위하여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를 대리하여 관여하고 있는 여부는 불문하고 그 구술서는 변호사전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9) 사무변호사가 아닌 자가 선거소송에서 변호인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변호인은 이 장의 목적상 구술서를 작성하는데 사무변호사가 된다.

제42조 (選舉訴訟裁判의 存續 : Continuation of trial of election petition) 모든 선거소송의 재판은 당해 재판에 대한 정의의 형편상, 재판종결시까지 항상 법적 기일에 실시되며 당해년도 법관근무명부는 당해 재판 및 소송에 따른 모든 절차의 종결시까지 존속하나 그 전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며, 전기한 재판당국은 전기한 재판 및 절차를 위해 계속 존속한다.

제43조 (選舉訴訟裁判時 檢察總長의 出席 : Attendance of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 on trial of election petition) (1) 모든 선거소송의 재판시 검찰총장은 스스로 또는 보조자에 의해 또는 지금까지 언급한 대리인에 의해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당해 재판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증인의 소환 및 심문에 관한 그리고 위반 자기소에 관한 선거법원의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할 의무가 있다.

- (2) 검찰총장은 선거법원의 명령이 없더라도, 당해 재판의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재판에 출두하도록 하

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를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 (3) 검찰총장은 선거법원의 명령이 없더라도 면책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부패 및 위법행위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법원에 그 위반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다. 또한 검찰총장은 재판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관할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4) 어떠한 자가 부패 및 위법행위로 선거법원에 기소된 경우 당해 법원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된 자를 약식재판할 수 있으며 그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기소된 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그 위반행위가 부파행위인 경우 법원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반행위가 위법행위인 경우 이 법에 의해 적당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가 부파행위인 경우, 어떠한 자를 약식재판하기 전에 당해 법원은 기소된 자에게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5) 어떠한 자가 위반행위로 기소된 경우 당사자가 배심재판을 선택하거나 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재판상 편리한 경우, 당해 법원은 소상으로 당사자를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약식재판법원에 출두명령할 수 있다.
- (6) 그 명령이 있은 후 (a) 만일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하여 그 위반행위가 기소할 만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거나 그 법원출두에 따른 보석금납부를 명할 수 있다. (b) 만일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하여 그 위반행위가 기소할 만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약식재판의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출두에 따른 보석금납부를 명할 수 있다. (c) 만일 기소된 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약식재

판의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만약 위반행위가 기소할 만한 행위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소환장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그에게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위반행위로 재판을 받는데 따른 보석금을 납부케 할 수 있다. 만약 당해 법원이 당사자를 직접 기소한 관할법원이 아닌 경우 당사자를 관할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제44조 (經費支給에 관한 選舉法院의 權限 및 訴訟費用 : Power to election court to order payment by country or borough or individual of costs of election petition) (1) 선거소송의 재판에 있어서 당해 소송의 피고인이 그 선거에 관하여 부패행위를 범한 증거가 없고 또한 당해 부패행위가 피고인의 인식과 동의하에 범하여진 증거가 없다고 선거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및 피고인이 그 부패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선거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

- (a) 부패행위가 당해 선거에서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고 법원에 보고된 경우 법원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선거가 시행된 지방정부나 자치도시가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 (b) 선거법원은 어떠한 자가 금전의 제공이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부패행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패행위를 조장 또한 지원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변호사에 의한 청문의 기회와 함께 동 명령이 행해지면 아니되 는지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한 증인의 심문 및 반대심문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사자 또는 그 중의 일부인에

게 의하여 지급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경비가 위와 같은 자의 1인 또는 2 이상의 자 또는 소송의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지급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2)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에게 비용지불을 명령하기 전에 이유를 제기하기 위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당해 범죄 또는 당사자에 관하여 법원에서 행해진 소송절차의 비용 또는 그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 (3) 고등법원에서의 소송행위, 소명 및 사건에 대하여 지급이 인정되는 경비에 관한 대법원규정은 원칙적으로 또한 가능한한 이 법 및 1868년의 의회의원선거법하에서의 소송비용 및 기타 소송절차에도 적용된다. 소송비용조사관은 고등법원에서의 소송행위, 소명 및 사건에 대하여 일반 임금수준에서 지급이 인정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인정해서는 아니된다.

第 8 章 기타 特別規定(Miscellaneous)

제45조 (腐敗 및 違法行爲에 대한 訊問 : Inquiry into alleged 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부패 및 위법행위가 어느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경우, 검찰총장은 형사소추법(1879년)에 따라 당사자를 소추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제46조 (僞證으로 인한 資格喪失의 撤回 : Removal of incapacity on proof

that it was procured by perjury) 이 법의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선거법원의 유죄판결 및 선거위원회의 고발에 의하여 부패행위금지법 및 이 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는 당해 유죄판결절차에서 증거를 제시한 증인과 그 보고서가 위증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고등법원이나 당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해 재판에서 당사자에 관한 유죄판결 및 보고서가 위증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판명되면 고등법원이나 당해 법원은 자격상실의 취소명령을 하며 그에 따라 자격상실이 철회된다.

제47조 (폐지)

제48조 (船舶을 이용한 選舉人의 輸送 : Conveyance of voters by sea in certain cases) 어떠한 선거인이 바다나 혹은 그 지류를 건너지 않고는 투표소에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은 당해 선거인을 선박으로 투표소까지 운반하는 제수단에 관한 규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그 운반수단에 대한 총비용은 이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한 도액에 따른다.

제49조 (이 法 施行前 選舉에 대한 選舉委員의 調査禁止 : Election commissioners not to inquire into elections before the passing of this act) 이 법시행후 양원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선거위원회가 어떤 선거에 관한 부패행위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선거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선거에 관한 조사권이 없으며 어떠한 증인도 조사에 응할 책임이 없으며 또한 이 법의 시행전 당해 선거에서 부패행위의 발생여부를 조사하려는 자문에 응답할 책임이 없다.

第 9 章 合法的 訴訟節次(Legal proceedings)

제50조 (法務長官의 의뢰에 의한 中央刑事法院의 裁判 : Trial in Central Criminal Court of indictment for corrupt practice at instance of Attorney General) 부패행위금지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가 고등법원에 제기되거나 법무장관의 의뢰에 의해 제출된 사건이 송영장에 의하여 철회된 경우 법무장관은 재판의 목적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형사법원에서 당해 소추를 재판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51조 (訴追를 위한 期間制限 : Limitation of time for prosecution of offence) (1) 부패행위금지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부패 및 위법행위를 범하거나 또는 기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소추는 당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 1년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당선에 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위원회의 조사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 1년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선거위원회의 보고서가 작성된 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2) 이 법의 목적상 확실한 위반자에 대한 영장의 송달 및 집행이 당사자의 도주, 은닉 또는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집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소환장, 영장 또는 기타의 소송서류의 일부가 소송절차의 집행으로 간주되며, 위반자에 대한 상기영장의 송달 및 집행이 당사자의 도주, 은닉 또는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보류되고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절차의 집행으로 본다.

제52조 (腐敗行爲로 起訴된 자에 대한 違法行爲의 有罪判決 : Persons charged with corrupt practice may be found guilty of illegal

practice) 부패행위로 기소된 자가 그 정황으로 보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당해 위반행위가 기소를 요하는 행위인 경우). 위법행위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범죄행위가 부패행위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법행위의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법지불·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로 기소된 자도 그 위반행위가 부패 또는 위법행위에 상당한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53조 (贈收賂罪의 訴追에 관한 法律適用 : Application of enactments relating to prosecutions for bribery) (1) 1854년 부패행위방지법 제10장 및 1863년 부패행위금지법 제6장은 이 법의 의미내에서 중수뇌 및 부패행위 등 기타 위반행위에 관한 기소 및 고발에도 적용된다.

- (2) 정식기소 및 약식기소 또는 이 법의 어떠한 기소 또는 금전적 벌금에 관한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도 기소된 자와 그의 처 또는 부도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인 증인으로서 조사의 대상이 된다.
- (3) 전항의 소추에서 기소된 자가 위법행위, 위법지불, 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로 유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당해 증서에 언급되어 있는 선거가 정당하게 실시되었고 당해 증서에 기명되어 있는 자가 당해 선거의 후보자였다는 선거관리관의 증서는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제54조 (略式起訴 : Prosecution on summary conviction) (1) 이 법에서 약식재판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모든 위법행위는 약식재판법에 의하여 기소된다.

- (2) 이 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에 관한 간이재판법원의 기소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소추에 대하여 일반법원 및 하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

제55조 (略式裁判의 申請 및 選舉法院에 起訴할 만한 違反行爲節次法 :

Application of Summary Jurisdiction and Indictable Offences Act to proceedings before election courts) (1) 이 법에서 선거법원의 약식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약식재판법은 그 위반행위가 단지 약식판결로 처벌할 만한 위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원에 제기한 위법행위에 대한 약식기소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어떠한 자의 출석은 강요되며 그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린 선거법원의 약식판결은 효력과 강제성이 있다. 또한 그에 따른 비용은 지불되며 당해 법원이 그런 판결이 발생한 지역의 약식재판인 것처럼 취급된다.

(2) 기소할 만한 위반행위를 범한 자의 재판부에 대한 기소규정은 대의와 일치하는 한 당해 법원이 치안판사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원이 기소된 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제56조 (高等法院의 裁判權 및 法院規則의 制定 : Exercise of

Jurisdiction of High Court, and making of rules of court) (1) 법원 규정에 의하여 기소 및 형사절차에 관한 한 이 법에 따라 고등법원의 재판권은 고등법원 왕좌부의 재판관에 의하여 집행되며 다른 면에서는 선거소송의 재판을 위하여 법원이나 법학원의 근무명부에 등록된 재판관에 의하여 집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으로부터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은 위법행위 · 위법지급 · 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에 관한 또는 선거비용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 법원규칙은 이 법 및 의회의원선거법(1868년) 그리고 그 법의 개정법을 의 목적상 관계기관에 의하여 제정, 폐지 또는 수정되며, 절차 및 집행

에 관한 법원규칙은 대법원이 제정할 수 있다.

제57조 (檢察總長과 訴追費用 :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and expenses of prosecution) (1) 이 법에 의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위법행위소추법(1878년)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법에 의하여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 검찰총장의 보좌관 또는 대리인도 상기의 제규정 및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이 법의 제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소추비용은 피고에 의하여 지불되지 아니하는 한 중죄에 대한 기소비용이 지불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기타의 자가 지불한다.

제58조 (地方政府나 自治都市 또는 기타의 者에 의하여 지불된 經費의回收 : Recovery of costs payable by country or borough or by persons)

(1) 선거법원의 명령 또는 이 법에 의한 (기소비용이 아닌) 어떤 경비나 금액을 지방정부나 자치도시 또는 기타의 자가 납부하여야만 하는 경우에, 재무부는 당해 경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지불된 경비만큼 회수하여야 한다.

(2) 선거법원의 명령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어떠한 경비나 금액이 어떠한 자에 의하여 납부되어야만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비나 금액은 이를 수수하여야 할 자에 대한 그의 채무로 하며, 재무부에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채무로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추심할 수 없다.

第 10 章 補則規定 · 定義規定 · 留保規定 · 撤回規定(Supplemental
Provisions, Definitions, Savings, and Repeal)

- 제59조 (證人の 答辯義務 및 免責證書 : Obligation of witness to answer, and certificate of indemnity) (1) 선거법원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 관련하여 증인으로 소환된 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 하며 면책이라는 구실로 그 선거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a) 선거법원의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하는 증인은 선거법원 직원의 서명서에 의하여 증인의 답변사실을 기재한 면책증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b) 선거법원에 의한 질문 또는 법정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증거에 관하여 위증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 또는 형사의 어떠한 소송에 있어서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2) 어떠한 자가 선거에 관하여 면책의 증서를 받고 부패행위금지법 및 이 법에 따라 상기의 선거에 관하여 면책증서에 기재된 날짜전에 범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절차가 당사자에게 집행되는 경우에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면책증서를 근거로 하여 그 법적 절차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당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기의 자에게 그 절차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 (3) 이 장에서 어떠한 규정도 면책증서를 받은 자라 하여도 이 법의 자격상 실규정으로부터 해제되거나 또는 전기의 자격상실을 집행하려는 어떠한 절차로부터 해제되지 아니한다.
- (4) 이 장은 “선거법원”이라는 표현이 선거위원회를 포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거위원회에 대한 증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5) 지방정부나 자치도시의 선거소송에 출석하여 대리인으로서 정당히 행동하고 있는 사무변호사나 어떠한 자가 당해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거나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선거를 조사하는 선거위원은 단지 당해 소송에 사무변호사나 대리인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기의 변호사나 대리인을 심문할 권한이 없다.

제60조 (法務長官에 대한 選舉法院 또는 選舉委員의 報告書 提出 : Submission of report of election court or commissioners to Attorney General) 어떠한 자가 부패 및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고할 때 선거법원 또는 선거위원은 당사자가 면책보고서를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즉 그 보고는 면책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기소하기 위하여 법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61조 (폐지)

제62조 (公告 및 告知書의 送達 : Publication and services of notices)

- (1) 이 법에 의하여 선거관리관에 의한 어떠한 공고도 투표법에 명시된 대로 행해져야 한다.
- (2) 어떠한 소환장, 고지서 또는 서류가 고등법원 또는 어느 선거법원 또는 선거위원에 출석하라는 이유로든 또는 이 법의 목적상 법원 또는 선거위원 앞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려거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려는 이유이든 지방정부나 자치도시의 선거절차에 관련되는 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소환장, 고지서 또는 서류는 당사자에게 상기의 지방정부나 자치도시의 최종 거주지에 배달하거나 등기로 우송 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우송은 그 서장의 우송료가 지불되고 주소성명이 정확히 기재되고 또한 등기로 우송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하다.

제63조 (候補者の定義 및 同意 없이 지명된 候補者の留保 : Definition of candidate, and saving for persons nominated without consent) (1)

부패행위금지법 및 그 법의 개정법률에서 “선거시 후보자(candidate at an election)” 및 “후보자(candidate)”라 함은, 전후의 관계상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원선거에서 의회에 직무하도록 선거된 자, 선거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자 또는 선거영장발부의 당일, 발부의 후 또는 선거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의원직의 취소 또는 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후에 자기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후보자로 선언된 자를 의미한다.

(2) 의회의원선거에서 어떠한 자가 그의 동의없이 타인에 의하여 후보자라고 공표된 경우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그 자가 이후에 그 공표에 승낙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되지 않는 한 어떠한 책임도 그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제64조 (用語에 대한 一般的 解釋 : General interpretation of terms) 이

법에서 전·후의 관계상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election)”라 함은 의회에 직무할 구성원의 선거를 말한다.

“선거소송(election petition)”이라 함은 의회의원선거법 및 그 법의 개정법률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말한다.

“선거법원(election court)”이라 함은 의회의원소송에서 당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를 말하며 고등법원이나 기타의 법원도 포함될 수 있다.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ers)”이라 함은 선거위원회(1852년) 및 그 법의 개정법률에 따라 지명된 자를 말한다.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라 함은 법무장관이 공석이거나 또는 당해 법무장관이 이해와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거인(elector)”이라 함은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지닌 자들의 성명이 명부와 책자에 등록된 자들을 말한다.

“선거인 명부(register of electors)”라 함은 전술한 명부나 책자를 말한다.

“투표대리인(polling agent)”이라 함은 투표법(1872년) 및 그 법의 개정 법률에 따라 투표소에 입장하도록 지명된 후보자의 대리인을 말한다.

“자(person)”라 함은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고 단체나 개인을 포함한다.

“사무실(committee room)”이라 함은 후보자가 선거에 관하여 그 대리자와 그곳에서 사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만으로서는 후보자가 주거로서 사용하는 가옥 또는 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선거인, 위원들 또는 기타의 자에게 그곳에서 연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 또는 건물을 사무실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public office)”이라 함은 국왕아래의 직책 또는 시, 구의 현장에 의한 직책 또는 지방자치법, 기초교육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한 직책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 포르보스타(스코틀랜드의 시장), 행정장관(chief magistrate), 의장, 시참사의원(alderman), 지방의회의원, 지방정부 또는 기타 지역의 공무원, 기타 지방기관의 위원 또는 지방의회, 위원회 등 기타 기관의 공무원 또는 기타 공무원의 직을 포함하며, 기타의 자치도시 또는 교구의 직책 등 위에서 언급된 현장이나 법령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되는 기타의 직을 말한다.

“법원(judicial office)”이라 함은 치안법원(justice of the peace)을 포함한다.

“개인비용(person expenses)”이라 함은 선거에 관한 후보자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후보자의 적정한 여비 및 선거를 목적으로 또는 선거와 관련하여 지불된 호텔비 등의 적정한 숙박비용을 포함한다.

“기소(indictment)”라 함은 고소(informantion)를 포함한다.

“비용(costs)”이라 함은 수수료 및 경비를 포함한다.

“지불(payment)”이라 함은 금전상 또는 기타 보수를 말한다.

“금전적인 보상(pecuniary reward)”과 “금전(money)”이라 함은 지위, 신분 또는 직업 그리고 가치있는 대상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금전에 관한 의미는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면허법(Licensing Act)”이라 함은 1792년과 1874년의 면허법을 말한다.

기타 다른 표현은 부패행위금지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제65조 (留保規定 : Saving) 폐지되었거나 더이상 존속하지 않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당한 자는 계속 자격상실의 효력이 발생하며, 비록 그가 이 법의 재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이 법은 당사자에게 계속 적용된다.

第 11 章 스코틀랜드에 대한 法律適用 (Application of Act to Scotland)

제67조 - 제68조(생략)

第 12 章 아일랜드에 대한 法律適用 (Application of Act to Ireland)

제69조(생략)

〈附錄 - 2〉 1983年 國民代表法과 1883年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比較

1983년 국민대표법	1883년 법과의 비교
<p>제1조 ~제7조 (의회 및 지방정부의 선거권)</p> <p>제8조 ~제13조 (의회 및 지방정부선거인의 등록)</p> <p>제14조~제17조 (복무자격 및 등록을 위한 신고)</p> <p>제18조~제22조 (의회의원선거의 투표장소 및 투표방식)</p> <p>제23조~제30조 (의회의원선거의 실시)</p> <p>제31조~제34조 (지방정부선거의 투표장소 및 투표방식)</p> <p>제35조~제40조 (잉글랜드·웨일즈지방정부의 선거실시)</p> <p>제41조~제45조 (삭제)</p> <p>제46조~제48조 (지방정부선거에 대한 보칙규정)</p> <p>제49조~제59조 (의회 및 지방정부선거에 대한 보칙규정)</p>	
<p>위반행위(Offenses)</p> <p>제60조 신분사칭(Personation)</p> <p>제61조 투표에 관한 기타의 위반행위(Other voting offences)</p> <p>제62조 신고에 관한 위반행위(Offences as to declarations)</p> <p>제63조 공적 의무의 위반(Breach of official duty)</p> <p>제65조 지도서, 투표용지등의 변조(Tampering with nomination papers, ballot papers etc.)</p> <p>제66조 비밀엄수의무(Requirement of Secrecy)</p>	
<p>선거사무장(The election agent)</p> <p>제67조 선거사무장의 임명(Appointment of election agent)</p> <p>제68조 의회의원선거에서의 부사무장의 임명(Nomination of sub-agent at parliamentary elections)</p> <p>제69조 선거사무장 및 부사무장의 사무소(Office of election agent and sub-agent)</p> <p>제70조 선거사무장의 임명불이행의 효과(Effect of default in election agent's appointment)</p> <p>제71조 선거사무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선거(Elections where election agent not requirement)</p>	<p>제24조</p> <p>제25조</p> <p>제26조</p>

1983년 국민대표법	1883년 법과의 비교
선거비용(Election expenses) 제72조 선거사무장을 통한 계약의 체결(Making of contracts through election agent) 제73조 선거사무장을 통한 비용의 지출(Payment of expenses through election agent) 제74조 후보자의 개인비용 및 잡비(Candidate's personal expenses and petty expenses) 제75조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비용의 지출금지 (Prohibition of expenses not authorized by election agent) 제76조 선거비용의 제한(Limitation of election expenses) 제76조의 A 선거비용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Power to vary provisions concerning election expenses) 제77조 지방선거의 공동후보자에 관한 비용제한(Expenses limit for joint candidates at local election) 제78조 청구서의 송부 및 청구의 시기(Time for sending in and paying claims) 제79조 다툼이 있는 청구(Disputed claims) 제80조 선거사무장의 청구(Election agent's claim)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8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 제34조
제81조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Return as to election expenses) 제82조 선거비용에 관한 신고(Declarations as to election expenses) 제83조 의회의원선거에서 보고와 신고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Where no return and declarations needed at parliamentary election) 제84조 보고 또는 신고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Penalty for failure as respects return or declarations) 제85조 보고서 및 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 또는 투표에 관한 벌칙(Penalty for sitting or vote where no return and declarations transmitted)	

1983년 국민대표법	1883년 법과의 비교
제86조 보고 및 신고의 불이행에 관한 공인된 면책사유(Authorized excuses for as to return and declarations)	제34조
제87조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Court's power to require information from election agent or sub-agent)	제35조
제88조 보고서 및 신고서의 열람을 위한 시간과 장소의 공고(Publication of time and place for inspection of returns and declarations)	
제89조 보고서 및 신고서의 열람(Inspection of returns and declarations)	
제90조 선거사무장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선거에서의 선거비용(Election expenses at elections where election agent not required)	
의회의원선거에서의 선전(Publicity at parliamentary elections)	
제91조 무료우편으로 선거연설문을 보낼 수 있는 후보자의 권리(Candidate's right to send election address post free)	
제92조 국외로부터의 방송(Broadcasting from outside United Kingdom)	
제93조 선거중의 방송(Broadcasting during elections)	
제94조 모조투표카드(Imitation poll cards)	
선거집회(Election meetings)	
제95조 의회의원선거의 집회를 위한 학교 및 장소(Schools and rooms for parliamentary election meetings)	제20조
제96조 지방선거집회를 위한 학교 및 장소(Schools and rooms for local election meetings)	제20조
제97조 선거집회의 방해(Disturbance at election meetings)	
제98조 시설이용료의 면제(Premises not affected for rates)	

1983년 국민대표법	1883년 법과의 비교
<p>선거관계공무원의 대리행위 및 경찰관의 선거운동(Agency by election officials and canvassing by police officers)</p> <p>제99조 후보자를 위하여 행동할 수 없는 공무원(Officials not to act for candidates)</p> <p>제100조 경찰관에 의한 불법선거운동(Illegal canvassing by police officers)</p>	
<p>투표자의 투표소에의 왕복수송(Conveyance of voters to and from poll)</p> <p>제101조 투표자의 수송을 위한 차륜의 임대차 금지(No hiring of vehicles to convey voters)</p> <p>제102조 투표자의 수송을 위한 금전지급금지(No payment for conveyance of voters)</p> <p>제103조 제101조 내지 제102조에 대한 보칙규정(Provisions supplemental to ss 101 and 102)</p> <p>제104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중 “차륜”("Carriage" in ss 101 to 103)</p> <p>제105조 해로에 의한 투표장소 도달(Access to polling place by sea)</p>	<p>제14조</p> <p>제7조</p>
<p>기타 위법행위, 위법적인 금전지급, 위법고용 또는 위법 임대차(Other illegal practices, payments, employments or hirings)</p> <p>제106조 후보자에 관한 허위진술(False statements as to candidates)</p> <p>제107조 후보직의 부정사퇴(Corrupt withdrawal from candidature)</p> <p>제108조 사무실로 사용될 수 없는 시설(Premises not to be used as committee rooms)</p> <p>제109조 선거고지물의 전시를 위한 금전지급(Payments for exhibition of election notices)</p> <p>제110조 선거관계발행물에 인쇄업자의 성명 및 주소기재(Prin- ter's name and address on election publications)</p>	<p>제9조</p> <p>제15조</p> <p>제7조</p> <p>제18조</p>

1983년 국민대표법	1883년 법과의 비교
제111조 유급선거운동원의 금지(Prohibition of paid canvassers)	제17조
제112조 위법한 목적을 위한 금전제공(Providing money for illegal purpose)	제13조
증수회, 향응 및 부당한 영향력행사 (Bribery, treating and undue influence)	
제113조 증수회(Bribery)	
제114조 향응(Treating)	제1조
제115조 부당한 영향력(Undue influence)	제2조
제116조~제119조 (보칙규정)	
제120조~제126조 (의회의원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제127조~제135조 (지방정부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제136조~제157조 (모든 선거소송에 관한 절차)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관한 선거법원의 인지결과(consequences of finding by election court of corrupt or illegal practice)	
제158조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범한 후보자에 관한 보고 (Report as to candidate guilty of a corrupt or illegal practice)	제4조, 제11조
제159조 부패행위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보고된 자(Candidate reported guilty of corrupt or illegal practice)	제5조
제160조 자신이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보고된 자(Persons reported personally guilty of corrupt or illegal practices)	
검찰총장의 부패행위 보고의무(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duty to report corrupt practice)	
제161조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제38조6항
제162조 법무직 기타 일정한 전문직 종사자(Member of legal and certain other professions)	제38조7항

1983년 국민대표법	1883년 법과의 비교
제163조 면허법에 의한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Holder of licence or certificate under Licensing Act)	제38조8항
선거무효 및 득표수의 감표에 관한 추가규정(Further provisions as to avoidance of elections and striking off votes)	
제164조 전반적 부패행위등으로 인한 선거무효(Avoidance of election for general corruption etc.)	제6조
제165조 부패대리인의 고용으로 인한 당선무효(Avoidance of election for employing corrupt agent)	제6조
제166조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득표수의 소감(Votes to be struck off for corrupt or illegal practices)	
위법행위, 위법지급·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로부터 선의의 행위를 제외할 수 있는 권한(Power to except innocent act from being illegal practice, payment, employment or hiring)	
제167조 구제신청(Application for relief)	제23조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소추(Prosecutions for corrupt or illegal practices)	
제168조 부패행위에 대한 소추(Prosecutions for corrupt practices)	
제169조 위법행위에 대한 소추(Prosecutions for illegal practices)	
제170조 부패행위의 소추에 대한 위법행위의 유죄판결 등(Conviction of illegal practice on charge of corrupt practice etc.)	
제173조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유죄판결에 의한 자격정지 (Incapacities on conviction of corrupt or illegal practice)	

1983년 국민대표법	1883년 법과의 비교
자격정지의 감경 및 면제(Mitigation and remission of incapacities) 제174조 감경 및 면허 등(Mitigation and remission etc.)	
위법지급, 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Illegal payments, employments or hirings) 제175조 위법지급 등(Illegal payments etc.)	제21조
소추에 대한 총칙규정(General provisions as to prosecutions) 제176조 소추를 위한 기간제한(Time limit for prosecutions) 제177조 약식처벌이 가능한 지방선거범죄(Local election offence punishable summarily) 제178조 연합왕국밖에서 범해진 위반행위의 소추(Prosecution of offences committed outside the United Kingdom) 제179조 단체에 의한 위반행위(Offences by associations) 제180조 선거실시증서에 의한 증거(Evidence by certificate of holding of elections) 제181조 검찰총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제51조 제57조
제182조~제186조 (보칙규정) 제187조~제190조 (잉글랜드와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 제191조~제199조 (런던시) 제200조~제207조 (보 칙)	

懸案分析 93-7 英國의 選舉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制(增補)

1993年 10月 7日 印刷

1993年 10月 11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 韓國컴퓨터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500 원

